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비례대표,

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이성배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정비지원계획에 대해 정의하고

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은

조합설립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

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○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는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정하였습니다.

- 이로 인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및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,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.
- 이에, 현행 제도의 장점은 유지하고,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